

대통령령 제 호

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건축물의 존치 등)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가.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·허가 등을 받았을 것
- 나.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
- 다.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
- 라.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

2.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·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”이란 법

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.

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존치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3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4조의2(건축물의 존치 등) ①</u> <u>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·허가 등을 받았을 것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나.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다.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라.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</u></p> <p><u>2.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·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</u></p>

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”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.

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존치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3에 따른다.